

「구미시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」

검 토 보 고 서

1. 발 의 자: 추은희 의원 외 1인

2. 찬 성 자: 강승수 의원 외 5인

3. 제안이유

- 구미시의 역사적·산업적·문화적 특성을 반영한 무형유산의 체계적인 보전과 전승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통문화를 계승·활용하여 시민의 문화적 자긍심을 높이고 지역문화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.

4. 주요내용

- 책무(안 제4조)
- 위원회 설치 및 기능(안 제5조)
- 향토무형유산 지정 및 해제(안 제6조~제7조)
- 전수인·전수단체의 인정 및 해제(안 제8조~제12조)
- 신고사항(안 제13조)
- 행정명령(안 제14조)
- 향토무형유산 보전·전승활동(안 제15조)
- 향토무형유산 전수 장학생 선정(안 제16조)
- 향토무형유산의 공개의무 등(안 제17조)
- 경비의 보조(안 제18조)
- 실태조사 및 기록화(안 제19조)

5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: 「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4조, 제5조, 제37조, 제38조, 제39조, 제44조, 제51조

6. 검토의견

○ 본 조례안은

- 「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구미시 무형유산의 보전과 전승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, 전수인·전수단체 인정, 전승 활동 지원 등을 통해 전통문화 계승에 기여하고자 발의된 안으로,

○ 검토 결과,

- 무형유산의 특성상 유형문화유산과는 별도의 제도적 관리가 필요하므로, 독립적인 조례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.
- 또한, 국가 및 경상북도 지정무형유산 외에도 구미시장이 지정하는 향토무형유산을 관리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, 지역 특색을 반영한 무형유산 전승체계 확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.
- 다만, 전수인 및 전수단체 인정·해제 과정에서 지원 형평성 차이로 인한 민원 및 갈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, 객관적이고 공정한 선정 기준과 세부 평가 절차를 마련하여 시행규칙에서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.